

별첨1**의료취약지 기준**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표1] <개정 2008.4.29.> 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 관련)

구분	소득세법 의료취약지역
1. 경기도	연천군
2. 강원도	양양군·고성군·화천군·양구군·평창군·횡성군·인제군·철원군·영월군·정선군
3. 충청북도	증평군·괴산군·단양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진천군
4. 충청남도	청양군·태안군·당진군
5. 전라북도	장수군·무주군·진안군·임실군·순창군
6. 전라남도	신안군·완도군·담양군·곡성군·진도군·강진군·장흥군·구례군·무안군·함평군·장성군·고흥군
7. 경상북도	울릉군·영양군·군위군·고령군·성주군·울진군·청송군·봉화군·예천군·영덕군·청도군
8. 경상남도	산청군·고성군·함양군·남해군·의령군·거창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호-261호<2024.12.30.> 제2조(의료취약지)

구분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1.대구	군위군
2.인천	강화군, 옹진군
3.경기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4.강원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5.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6.충남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7.전북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8.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9.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0.경남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1.제주	서귀포시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2025.2.)

분만취약지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인천	옹진군*	강화군	-
경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포천시*, 여주시
강원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 고성군, 양양군	강릉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영월군*, 철원군*, 양구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진천군, 음성군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충남	-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서천군, 홍성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전남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곡성군, 구례군, 장흥군, 함평군*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고흥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대구	군위군	-	-
경북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울릉군*	문경시, 봉화군*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하동군*, 거창군*
제주	-	-	서귀포시*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의 既 지원 지역(외래, 순회진료 지원)